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설기관 근거규정 마련 등〉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00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2
2. 과학기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3. 27.

다. 회 부 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5조의3(부설기관)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5조의3(부설기관)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u>②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나, 현재 연구기관의 경우 개별 연구기관의 정관 및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부설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부설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출연연 부설기관 현황 >

연구기관	부설기관명	설립연월	2026년 예산	정규직 인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0. 1.	1,346억 9,000만원	543명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2002. 1.	816억 9,100만원	354명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2010. 1.	254억 9,800만원	103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13. 2.	144억 3,600만원	68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별도로 연구기관의 본원과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분원·센터·연구소·본부 등 지역조직은 현행 제12조의3¹⁾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6년 7월 현재 총 63개가 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개별 연구기관의 정관 및 연구회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수요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4개 부설기관은 일부 기관의 경우 500명 이상의 정규직 인력과 연간 1천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등 일반적인 내부조직에 비하여 상당한 규모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능적 독립성이 크고 규모가 큰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임의로 부설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설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적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연구회에는 별도의 부설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선 연구회 내부 센터 형태로 설치·운영 중임.

○ 다만 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을 포괄하여 기관 간 협력·조정 및 융합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범 출연연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

- 실제로 국가과학AI연구센터도 출연연이 보유한 데이터·컴퓨팅 자원을 통합·연계하고 출연연 전체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등 개별 연구기관을 넘어서는 공통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부

는 향후 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연구회에도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두어 향후 새로운 연구환경 및 범 출연연 차원의 공통 지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행법 상 연구회와 연구기관 모두 부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부재하므로, 부설기관의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과학기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1조(사업)는 연구회의 사업에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제21조(사업)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u>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연구데이터 분석, 연구가설 수립,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연구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별 연구기관이 AI 데이터·컴퓨팅 자원과 전문역량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연구기관

간 자원과 역량을 연계·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출연연은 각 연구분야에서 장기간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연구시설·장비 및 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AI 기술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경우 출연연의 연구효율성과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 출연연을 포괄하여 협력·조정 및 융합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회가 과학기술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기관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연연의 연구 수행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회 내부에 센터 형태로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과학기술 분야의 AI 활용이 향후 출연연 전체의 연구방식과 연구협력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사업을 연구회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사

업 추진의 근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출연연 AI 전환을 위해서는 AI와 각 기술분야 간 전방위 융합 도모가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에서 관련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